

1. 의결주문

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유산 산업 분야의 장기적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가유산 전문 인력 양성이 해당 산업의 취·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취·창업 장학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국가유산 분야 취·창업 예정 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 보조를 신설함(안 제2조제1항제6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기 확 보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국가유산 분야 취·창업 예정 학생 :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 보조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)	제2조(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)
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은 「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(이하 “학생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6. 국가유산 분야 취·창업 예정</u> <u> 학생 :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</u> <u> 보조</u>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